

1. 개정이유

친환경별채 지원, 입목별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목별채 신고의 연기신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임산물 수입자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
(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3 신설)

과징금 납부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 과징금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필요한 신청서를 마련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5, 안 제25조의6 신설)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와 금액의 기준,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다. 친환경별채 지원 관련 서식, 규정 등 마련(안 제44조의2, 별표 3 신설, 안 제47조 개정)

지원신청서 등 서식을 마련, 친환경별채 강화를 위한 별채구역 면적기

준, 이격거리 등 규정정비, 임의벌채 제한사항 등을 마련함.

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조사기준 마련(안 제45조의 3 신설)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양식과 전문기관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조사기준을 마련함.

마. 입목벌채 신고의 연기신고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46조제5항 신설)
입목벌채 허가·신고제도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기신고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

바. 임산물 수입자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9조제3항제2호 개정)

수입권공매방식의 수입이익금 산정방법을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구체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의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5(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등) ① 법 제23조의4제4항

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기준은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업무대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림청 소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중 위탁·대행 실적이 있는 경우
2. 산림청 소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중 유사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②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지정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고, 관리대행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관리업무대행의 산림사업 종류 및 범위

3. 관리업무대행 기간(착수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 및 지역

4.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관리대행자 지정 최종 심의결과

③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사업 대상지역 확보

2. 산림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산림사업의 발주, 현장조사·점검 및 감독,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조제4항제1호 중 “제36조제4항”을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등) 영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 및 기준 등)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

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3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입목의 벌채신고를 한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42조의2제6항에 따른 남겨진 입목에 대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금지기간 내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49조제3항제2호 중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을 “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 한”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을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 중 “생태적”을 “경관·재해 영향을 고려하면서 생태적”으로 하고, 같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가) 중 “5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20미터”를 “40미터”로 하고, 같은 (2) (나) 항 외의 부분 본문 중 “10 이상”을 “20 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 (4)(나) 중 “20m”를 “40m”로 하고, 같은 호 다목(1)(가) 단서 중 “Ⅳ급지·Ⅴ급지”를 “Ⅴ급지”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미 벌채된 지역(벌채구역에서 잔존구역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연접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최소 8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림사업 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통기준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수종갱신에 따른 모두베기는 제2호가목(2)(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 까지,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해서는 제44조의2, 제45조의3, 제47조 제1항,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 기준 · 방법 (제45조의3제2항관련)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1. 사업의 타당성	지역·지구 지정현황	가. 벌채구역의 지역·지구 지정현황 조사	자료분석
	산 립 사 업 의 행위제한	나. 「산림자원법」, 「산림보호법」, 「산림휴양법」, 타 법에 따른 벌채가능 여부 조사	자료분석
	기 준 벌 기 령 및 수종갱신 판정	다. 「산림자원법」에 따른 기준벌기령 조사 및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충족 및 제한여부 검토	자료분석
	벌채사업 대상지	라. 능선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해당 여부 조사	자료분석· 현지조사
	벌채구역 면적의 적정성	마. 수확을 위한 벌채방법에 따른 벌채구역 면적의 적정성 검토	자료분석
	벌채작업 및 사후 관리	바. 사업기간, 산물처리, 운반방식 등 사업방법의 적합성 검토 사. 작업로, 반출로, 임도 및 산물처리장 등 사업 공간의 확보 및 설치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조재부산물 등의 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검토	자료분석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원칙의 부합성	지형 보전	가. 수치표고모델(DEM)를 활용하여 산정부 높이, 경사도, 표고 산출, 주요 산줄기 인접성 조사	자료분석
	생태계 보전	나.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영향권 적정성 검토, 희귀 동·식물 분포 현황 조사 및 보호·관리 방안	자료분석
	환경 보전	다. 수질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 소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저감 대책	자료분석
	지역사회 상생 및 피해 저감	라. 산림이용 현황, 벌채구역 주변 시설물의 확인 및 피해저감 대책 수립, 반출로 확보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개발가능성	마. 대상지 및 인근의 개발가능성 여부	자료분석

3. 경관 및 재해 영향	산지경관	가. 산지경관 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등 경관자원 훼손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재해위험성	나. 산사태 위험여부 판정 및 저감대책 수 립, 산불위험검토 등 산지재해 위험성	자료분석· 현지조사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257mm×182mm[백상지(1종) 34g/㎡(재활용품)]

과징금 처분대장

① 발행 번호	② 납부고지 연월일	③ 성명 (대표자)	④ 주소 (회사명)	⑤ 위반내용		⑧ 과징금	⑨ 납부 기한	⑩ 납부일	⑪ 비고
				⑥ 날짜	⑦ 위반행위				

210mm×297mm [백상지 80g/m²]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 일
------	------	-----------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과징금 부과명세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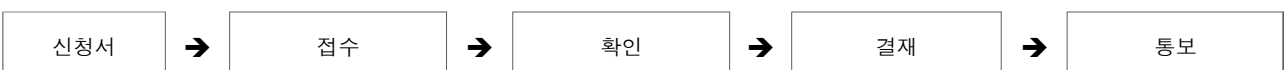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앞쪽)

친환경벌채 [] 지원 [] 변경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청인 (법인명)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지소유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	------

입목소유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	------

산림 소재지				
--------	--	--	--	--

벌채구역 내 현황									
수종	합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소나무	편백	삼나무	기타 침엽수	활엽수 (참나무)
수종별 입목축적(m ³)									
수종별 잔존재적(m ³)									
벌채구역 면적				m ²	벌채구역 입목축적(㉠)				m ³
벌채면적				m ²	벌채량(㉡)				m ³
잔존면적				m ²	잔존재적(㉢)				m ³
					잔존재적 비율 (㉣=㉢/㉠)				%

지원금 입금계좌번호	(예금기관명)	(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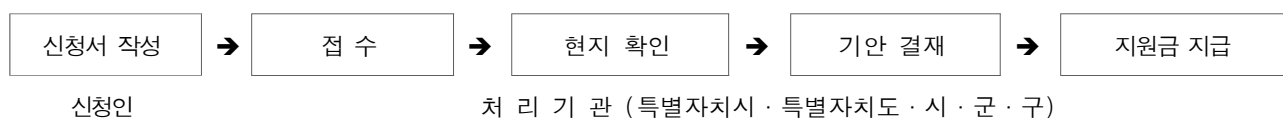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의 경우 가. 친환경벌채 이행 서약서 나. 입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를 경우에 한한다.) 다. 산지소유자의 동의서(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를 경우에 한한다.) 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2. 친환경벌채 변경지원신청의 경우 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작성 방법

- ① 성명 : 신청자의 성명(법인명)을 적습니다.
- ② 생년월일 : 신청자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을 적습니다.
- ③ 주소 : 신청자의 거주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④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신청자의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⑤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 신청자와 해당 산림 소유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⑥ 산림소재지 : 해당 산림이 소재하는 시·군·구, 읍·면·동, 리 및 지번을 적습니다.
- ⑦ 산지소유자 : 신청인(법인명)과 동일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⑧ 입목소유자 : 신청인(법인명)과 동일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⑨ 수종별 입목축적 : 수종별로 벌채수량예정조서상 축적을 적되, 세제곱미터(㎥) 단위로 적습니다.
- ⑩ 수종별 잔존재적 : 수종별로 잔존구역 내 실제 존치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되, 세제곱미터(㎥) 단위로 적습니다.
- ⑪ 벌채구역 면적 : 입목벌채의 구역면적을 적되, 수종별 면적의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 ⑫ 벌채면적 : 벌채구역 면적 내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면적을 적습니다.
- ⑬ 잔존면적 : 벌채구역 면적에서 벌채면적을 제외한 존치면적을 적습니다.
- ⑭ 벌채구역 입목축적 : 입목벌채 하기 전 벌채구역 내 전체 입목의 재적을 적되, 수종별 입목축적의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 ⑮ 벌채량 : 벌채구역 내 실제 벌채되는 지역(벌채면적)에서 벌채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습니다.
- ⑯ 잔존재적 : 잔존면적 내 존치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습니다.
- ⑰ 잔존재적 비율 : 벌채구역 입목축적 대비 잔존재적을 백분율로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적습니다(지급금의 지급한도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2조의2를 따릅니다).
- ⑱ 지원금 입금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자 명의로 된 입금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⑲ 변경사유 : 변경지원신청서의 경우, 변경신청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입목벌채등 허가신청서 내용				
신청 접수 일시	신청인 성명	소재지(시·군·구)	구역면적(㎡)	벌채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지보전협회장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장 또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입목벌채등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시행규칙 제4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작성방법	“벌채방법” 란에는 모두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수종갱신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모두베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의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 설>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5(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등)		①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관

<신 설>

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기준은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업무대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림청 소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중 위탁·대행 실적이 있는 경우

2. 산림청 소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중 유사 산림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②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지정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고, 관리대행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관리업무대행의 산림사업 종류 및 범위

3. 관리업무대행 기간(착수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 및 지역

4.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관리대행자 지정 최종 심의결과

③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사업 대상지역 확보

2. 산림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6조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생 략)

<신 설>

<신 설>

및 집행

3. 산림사업의 발주, 현장조사·점검 및 감독,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제36조 제5항-----

2.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등) 영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 및 기준 등)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입목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① (생략)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굴취 구역 및 벌채·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

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
서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
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의 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11. (생략)

② (생략)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 법 제36조제6항-----

⑤ 입목의 벌채신고를 한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할 수 있다.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

다만, 제3호의 경우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42조의2제6항에 따른 남겨진 입목에 대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금지기간 내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①・② (생략) ③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u>납입의 의사를 표시한</u> 금액 ④・⑤ (생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 <u>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u> <u>의 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u> <u>한</u> ----- -- ④・⑤ (현행과 같음)
---	--